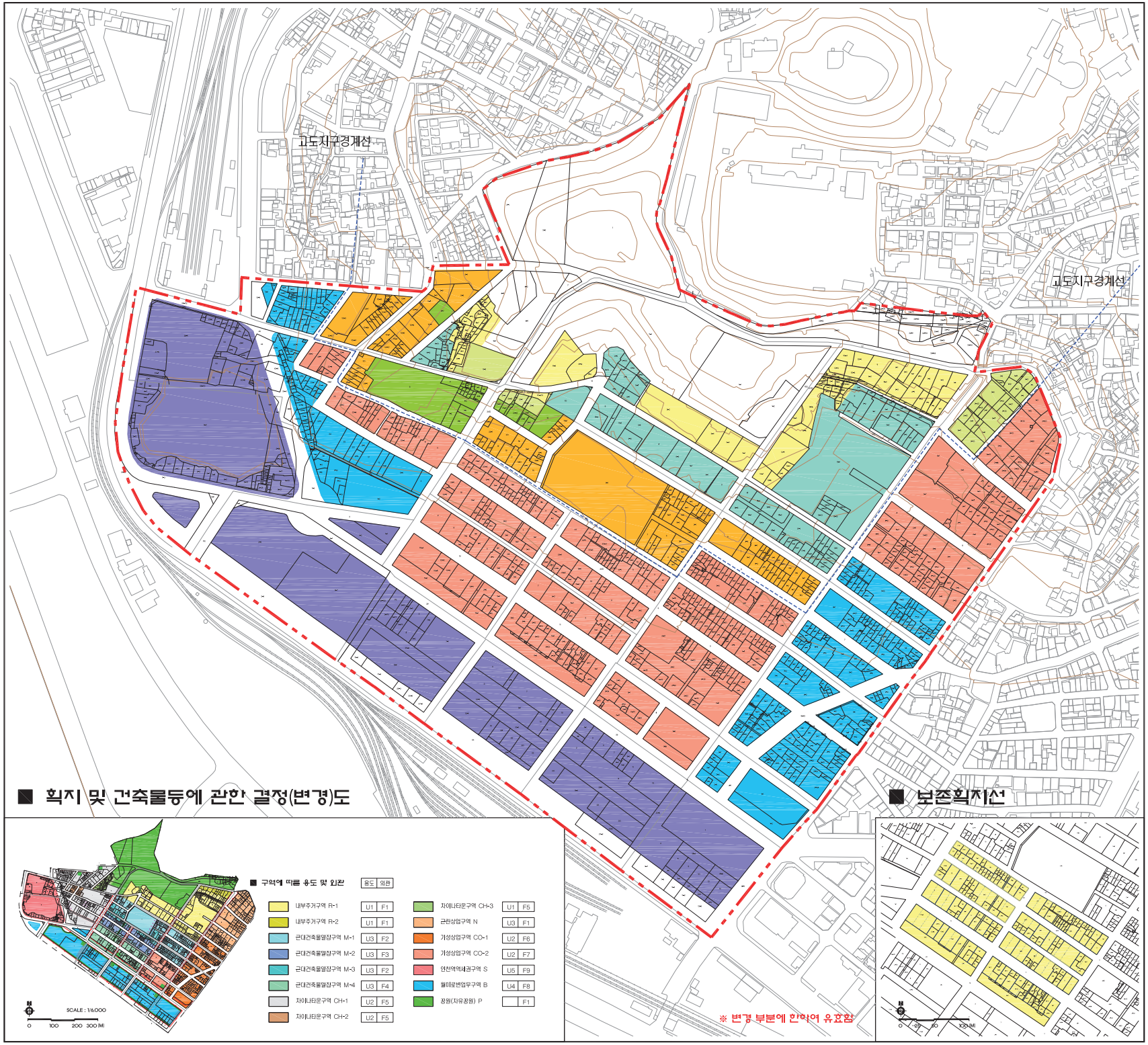

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높이 및 밀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■ 범 례

■ 기 정

구 분	최고층수/최고높이 *1	용적률	건폐율
	2층이하 (7m이하)	120%이하	60%이하
	3층이하(10m이하)	150%이하	60%이하
	2층이하 (7m이하)	160%이하	80% 이하
	3층이하(10m이하)	240%이하	80% 이하
	4층이하(14m이하)	320%이하	80% 이하
	4층이하/ 14m 이하 (건폐율 60% 초과시) 5층이하/ 17m 이하 (건폐율 60% 이하)	320%이하	80% 이하
	5층이하/ 20m 이하 (건폐율 60% 초과시) 6층이하/ 24m 이하 (건폐율 60% 이하)	400%이하	80% 이하
	5층이하/ 20m 이하 원칙	350%이하	70% 이하 *2
	6층이상 부분/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	800%이하	

*1 공통사항: 도로사선제한, 문화재 영각제한
*2 6층 이상부분-40% 이하

■ 변 경

구 분	최고층수/최고높이 *1	용적률	건폐율
	7m 이하	120% 이하	60% 이하
	10m 이하	150% 이하	60% 이하
	7m 이하	160% 이하	80% 이하
	10m 이하	240% 이하	80% 이하
	15m 이하	320% 이하	80% 이하
	4층 이하/ 14m 이하 (건폐율 60% 초과시) 5층 이하/ 17m 이하 (건폐율 60% 이하)	320% 이하	80% 이하
	5층 이하/ 20m 이하 (건폐율 60% 초과시) 6층 이하/ 24m 이하 (건폐율 60% 이하)	400% 이하	80% 이하
	5층 이하/ 20m 이하 원칙	350% 이하	70% 이하 *2
	6층 이상 부분/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	800% 이하	

*1 공통사항: 문화재 영각제한
*2 6층 이상부분-40% 이하

구 분	작 성 자	입안 및 결정권자	
	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 속	(주)JS희	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	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
직 위(직)	무	-	도시계획 담당
직 명	도시계획 기 술 사	지방시설 주사	지방시설 사무관
성 명	정 원 식	나 승 일	이 필
확 인			

지 정 권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지 정 일 자	2017년 01월 16일
고 시 년 도	2017년 01월 16일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0호
작 성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작 성 년 월 일	2017년 01월 16일
지적위원소유 및 방향자	인 천 광 역 시 장

N

S = 1/1,500
0 50 100 200 (m)